

[사 건 명] 행심 2014-16

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청구

청구인 : ○○○

피청구인 : ○○고등학교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14.7.23. 청구의 ○○○에 대하여 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.

[재결이유]

I. 사건개요

가. 피청구인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로 인하여 2014. 7. 7. ○○고등학교 매점 및 음료자동판매기 위탁운영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하였다. 위 입찰공고에 의하면 낙찰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, 독립·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‘생업지원 대상자증명서’ 를 제출한 자,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‘장애인 증명서’ 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, 우선낙찰자가 없을 경우 일반인 중에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.

나. 위 입찰공고에 따라 청구의 ○○○과 청구인, 청구의 ◎◎매점(◇◇◇)이 입찰하였는데, 청구의 ○○○은 장애인으로서 입찰금액을 38,000,000원으로,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입찰금액을 36,500,000원으로, 청구의 ◎◎매점(◇◇◇)은 36,100,000원으로 각 입찰하였다.

다. 2014. 7. 18. 피청구인은 우선낙찰자대상자인 청구의 ○○○(장애인)과 청구인(국가유공자) 중 최고가격을 제출한 청구의 ○○○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, 2014. 7. 23. 청구의 ○○○에게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승인하였다.

라. 청구인은 2014. 9. 25. 피청구인이 청구의 ○○○에게 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 이라고 한다)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.

II. 이 사건 처분의 위법, 부당 여부

1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.

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제4항은 ‘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·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.’ 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나. ○○고등학교의 매점 및 음료자동판매기 위탁운영 사용허가 입찰에서 청구의 ○○○은 장애인으로 우선계약 대상자이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인데, 이미 ㉠㉠여고 및 다른 학교에서도 매점을 운영하고 있어, 이 사건 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것이어서, 직접 사업할 수 없는 청구의 ○○○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한 것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2. 피청구인의 주장

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가. 피청구인은 2012년 매점입찰에서 입찰최고가격 2순위인 청구인을 생업지원대상자로서 우선적으로 매점사용 허가해 주었고, 2013년 수의계약으로 1년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「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에 의하면 청

구인은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청구인도 매점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.

나. 피청구인은 2014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 사건의 입찰에서 최고가격을 제출한 1순위자인 청구외 ○○○에게 매점 및 음료자동판매기 사용을 허가한 것이며, 현재 ○○○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직접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, 이 사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.

3. 판단

가. 관련법령

- 1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제1항은 '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고, 제2항은 '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'고 규정하고 있다.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'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- 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(생업지원) 제1항은 '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'고 규정하고 있다.
- 3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(생업지원) 제1항은 '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'

고 규정하고 있고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(생업지원) 제1항은 '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'고 규정하고 있다.

나.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

- 1)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2014. 7. 7. ○○고등학교 매점 및 음료자동판매기 위탁운영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하였고, 그 후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외 ○○○에게 공유재산(매점 및 음료자동판매기)에 대하여 2014. 8. 1.부터 2015. 7. 31.까지 사용료 38,000,000원으로 사용허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- 2) 청구인은 청구외 ○○○이 이미 ㉠㉠고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○○고등학교의 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데도 ○○○에게 낙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관련법령에 1인 1매점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에도 다른 학교의 매점을 운영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.
- 3)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이 직접 사업할 수 없는 장애인인 ○○○에게 낙찰되었으므로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,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4항은 '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·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.'고 규정하여 허가를 '받은' 자가 직접 사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지, 그 전단계인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기 위한 '일반입찰'과 관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.
- 4) 청구인은 위법한 입찰결과에 따라 우선계약 2순위 낙찰자인 청구인이 매점을 운영할 수 없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,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

구외 ○○○에게 낙찰된 것으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Ⅲ. 결어

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